■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6호서식] <개정 2022. 6. 7.>

골재채취(선별·파쇄 및 선별·세척 포함) 현황보고

상호(법인명)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등록업종		등록번호
사무소 소재지		전화번호

골재채취 현황 (　　/ 분기)

허가(신고)기간	①허가(신고)량(㎥)	채취량(㎥)		허가(신고) 잔량 (㎥)
		분기중 채취량	연도누계	

반출 현황

②공급지역	③용도별	반출량(㎥)	④성분	㎥당 가격(상차도)

「골재채취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보고인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한국수자원공사사장,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귀하

기재 요령

1. ①허가(신고)량란은 골재선별·파쇄 및 바다골재선별·세척인 경우에는 신고량을 기재하고, 그 밖의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량을 기재합니다.
2. ②공급지역란은 시·군·구 단위로 기재합니다.
3. ③용도별란은 레미콘·일반콘크리트·아스콘·도로기층·보조기층·철도·콘크리트파일·벽돌·미장 및 그 밖의 용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4. ④성분란은 산림골재(쇄석자갈 및 모래)인 경우 암석의 종류(화강암·현무암 등), 그 밖의 경우는 자갈 및 모래로 구분하되, 생산지(하천·육상 또는 바다)를 기재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